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

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제목 실내체육시설, 안마소 등 방역조치 조정 안내

1. 관련: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-41176(2021.12.16.)

2. 위중증, 사망자 급증 등 최근 악화된 방역상황에 대응하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의 지속을 위해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, 사적모임 제한 강화 등의 방역강화 조치를 시행토록 안내한 바 있습니다.

가. **(안마소 등)** 다만, 의료법 등에 의한 안마소, 안마시술소의 경우, 시각장애인이 운영 또는 종사하는 시설로서 운영시간 제한으로 인해 생계유지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시각장애인으로서 사실상 직업선택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,

나. **(실내체육시설)** 실내체육시설 중 풋살장, 농구장 등 운동 특성상 5명 이상이 모여야 경기 성립이 가능한 운동(실내체육시설)시설 등의 경우, 사적모임 제한으로 사실상 영업중단 상태를 겪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,

다. 관계부처 등과의 논의를 거쳐 각각 아래와 같이 해당시설의 방역수칙을 조정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<주요 조치 사항>

구분	주요 내용
마사지업소 안마소	• (운영시간 제한) 22시~익일 05시 운영 중단
	▲마사지업소·안마소 단, 「의료법」 제82조 및 「안마사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제외
실내체육시설	•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단,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.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(시합 등) 가능

다. 적용기간: **2021.12.22.(수) 0시 ~ 2022.1.2.(일) 24시**

라. 적용지역: **전국 17개 시·도***

* 서울특별시, 부산광역시, 대구광역시,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, 대전광역시, 울산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경기도, 강원도, 충청북도, 충청남도, 전라북도, 전라남도, 경상북도, 경상남도, 제주특별자치도

3. 위와 같은 방역조치의 이행을 위해,

○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시설 또는 관할 지역 내 적용대상 시설에 방역지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,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,

-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, 관련 단체 등에 안내하며,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토록 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본부(행정안전부)는 중앙합동점검단 등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부처의 이행상황 점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: 1.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2. 전국 모임 · 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. 끝.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장

수신자 본부각과장, 중앙행정기관, 중안재난안전대책본부장, 중앙방역대책본부장, 전국 17개 시도지사

주무관	홍명기	행정사무관	안웅식	생활방역팀장	조우경	사회전략반장	전결 2021. 12. 21. 손영래
협조자							

시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-41841 (2021. 12. 21.) 접수

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(어진동) 7층 / http://ncov.mohw.go.kr

전화번호 044-202-1725 팩스번호 044-202-0000 / mk7069@korea.kr / 비공개(5)

위험할 땐 119, 힘겨울 땐 129